

## ◎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- 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38호, 2021. 6. 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###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전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제1호(신규화학물질) 및 제2호(기존화학물질)를 별표와 같이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게재 생략

○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[www.nier.go.kr](http://www.nier.go.kr)>법령정보>고시)에 게재되어 있음